

제 호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(정정, 말소) 통지서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(정정, 말소)했음을 통지합니다.

당사자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처분결과 및 사유			

※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담당자: 문의전화:)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또는 산림청장

직인